

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

(김효상의원 대표발의)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3. 17. 김효상 의원 외 4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3. 18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
(2022. 3. 30. 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(김효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시민들의 휴식과 회복을 위하여 맞춤형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(官) 주도형 공원 조성을 탈피,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공원 조성 및 유지 관리 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4조)
-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시민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김동의 전문위원)

가. 본 관(官) 주도형 공원 조성을 탈피,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공원 조성 및 유지 관리 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 제정하는 사항으로

나. 민-관을 연결하는 주민참여 활성화와 지속성을 위한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이 기대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3. 17. 화성시장 제출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3. 18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
(2022. 3. 30. 수정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 (정연송 도시재생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3조의5 및 제49조의2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 비율 규정(안 제32조의2 신설)
-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 비율 규정(안 제36조의2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김동의 전문위원)

- 가. 본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,
- 나.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규정하고,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택 등 건축물의 공급 비율을 규정하는 사항으로
- 다.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 (붙임 수정 대비표 참고)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붙임 : 수정대비표

[붙임]

수정 대비표

(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

수 정 전	수 정 후
<p>제32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 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)</p> <p>① 법 제43조의5제1항 전단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<u>100분의 50</u>을 말한다.</p> <p>②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<u>100분의 30</u>을 말한다.</p>	<p>제32조의2(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 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)</p> <p>① 법 제43조의5제1항 전단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<u>100분의 30</u>을 말한다.</p> <p>②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<u>100분의 15</u>를 말한다.</p>
<p>제36조의2(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비율)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<u>100분의 50</u>을 말한다.</p>	<p>제36조의2(소규모재개발사업의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비율) 법 제49조의2제2항 전단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이란 <u>100분의 30</u>을 말한다.</p>

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3. 17. 화성시장 제출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3. 18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
(2022. 3. 30. 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 (박홍서 도시디자인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설계공모의 시행을 위한 별도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 조문이 신설되어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2조)
- 운영위원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(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김동의 전문위원)

가. 본 조례안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설계공모의 시행을 위한 별도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 조문이 신설되어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

나. 주요내용으로는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, 운영위원 자격 및 구성,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

다.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생략

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3. 17. 화성시장 제출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3. 18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
(2022. 3. 30. 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(임주한 건축행정팀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(안 제38조제4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김동의 전문위원)

가.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,

나.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생략

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공영애의원 대표발의)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3. 17. 공영애 의원 외 4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3. 18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
(2022. 3. 30. 원안가결)

2. 제안요지설명 (공영애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화성시 관내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, 거주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일부개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보조금(공동전기료)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보조금(공동전기료) 지원신청 및 지원비용의 청구 등을 규정함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김동의 전문위원)

가. 본 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거주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화성시 관내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,

나.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규정하고,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비용의 청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생략